

『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5월 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5월 19일

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김 인 종

나. 제안이유

-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변경(안 제8조제2항)
- 보조경매 참가자 신청사유 명시(안 제32조)
- 정가 또는 수의매매 품목 증가로 인한 품목 추가
(안 제43조제1항)
-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시장사용료 조정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(안 제48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
-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- 업무규정 표준안[농림부 유통정책과-3374호(2007.7.31)]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“3년”에서 “5년”으로 변경(안 제8조제2항)
-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에 따른 보조경매 참가자 신청사유 명시로 중도매인 경매 질서 확보(안 제32조)
- 정가 또는 수의매매 품목 증가로 인한 품목 추가(안 제43조 제1항)
- 전자거래방식 운영 및 시장사용료 조정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(안 제48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)

○ 검토 결과

-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안으로

-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
- 향후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정가·수의매매방식 거래 활성화에 대비한 시장사용료 근거 마련과 정가·수의매매 품목 추가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품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